



뉴욕시 세액공제에 대한 안내

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뉴욕시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
- 뉴욕시 근로소득 세액공제
- 뉴욕시 가게 세액공제
- 뉴욕시 교육 세액공제
- 뉴욕시 강화 부동산세 크레딧

뉴욕시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

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.

- 1년 내내 또는 1년 중 일정기간 뉴욕주에 거주한 경우
- 12월 31일에 4세 이하인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
- 연방 조정 총소득액(AGI)이 \$30,000 이하인 경우, 그리고
- 뉴욕주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(뉴욕주 및 뉴욕시 세액공제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)

공제액은 얼마입니까?

공제는 뉴욕주 세액공제액의 최대 75%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본 공제액의 신청이나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세무용지 IT-216 *Claim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*(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신청) 및 해당 지침사항을 참조하십시오(영어버전만 사용가능).

뉴욕시 근로소득 세액공제

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.

- 1년 내내 또는 1년 중 일정 기간 뉴욕주에 거주한 경우, 그리고
- 연방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

본 공제액은 뉴욕주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입니다.

공제액은 얼마입니까?

- 공제액은 연방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최대 5%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- 1년 중 일정기간만 거주한 경우, 공제액은 뉴욕시 세금납부의무가 있는 소득액에 의해 결정됩니다.

본 공제액의 신청이나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세무용지 IT-215, *Claim for Earned Income Credit*(근로소득 세액공제 신청) 및 해당 지침사항을 참조하십시오(영어버전만 이용가능).

뉴욕시 가계 세액공제

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본인이 다른 세금 납부자의 연방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보고될 수 없는 경우
- 뉴욕시 거주자 또는 일정 기간동안 거주자였던 경우, 그리고
- 다음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:

세금보고 형태	연방 조정 총소득액	공제 총액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독신자 	\$12,500 이하	최대 \$15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부 공동세금보고 •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 • 부양 자녀가 있는 유자격 미망인(또는 홀아비) 	\$22,500 이하	\$10 ~ \$30. 그리고, 연방 세금보고에 보고된 각각의 세금면제에 대해 추가로 \$10 ~ \$30.

본 세금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:

- **1년 내내** 뉴욕시 거주인인 경우 본 공제액을 세금보고에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.
- **1년 중 일정기간** 동안만 뉴욕시에 거주한 경우에는 세무양식 IT-360.1, *Change of City Resident Status*(시 거주자 상태의 변경, 영어버전만 이용가능)를 작성하여 세금보고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뉴욕시 교육 세액공제

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.

- 뉴욕시에 거주하거나 1년 중 일정기간만 거주한 경우, 그리고
- 본인이 다른 세금 납부자의 연방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보고될 수 없는 경우

공제액은 얼마입니까?

- 부부 공동세금보고 및 부양자녀가 있는 유자격 미망인(또는 홀아비)인 경우: 최대 \$125
- 기타 납세자의 경우: 최대 \$63

크레딧 청구 방법:

- 뉴욕 주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, 해당 신고서에 직접 본 크레딧을 청구해야 합니다.
- 뉴욕 주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본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- 당국 웹사이트의 온라인으로 청구 신청하기_에서 무료로 직접 청구 또는
 - 양식 NYC-210, *뉴욕시 학교세 크레딧 청구*를 우편으로 청구 (지침 은 영어로 제공)

뉴욕 시 강화 부동산세 크레딧
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크레딧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.

- 가구 총소득이 \$200,000 미만인 경우
- 같은 뉴욕 시 거주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
- 전체 세금연도 동안 뉴욕 시에 거주했던 경우
- 다른 납세자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 상 피부양자로 청구되지 않은 경우
- 부동산세를 완전히 면제를 받지 않은 거주지를 소유했던 경우 및
- 주택 소유주 또는 세입자로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
 - 주택 소유주로서 귀하 또는 배우자가 부동산세를 지불하였으며 귀하의 비거주용 거주지에서 수령한 임대료가 전체 수령 임대료의 20% 이하였던 경우
 - 세입자로서 귀하 또는 가구 구성원이 귀하의 거주지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한 경우

크레딧 금액

- 최대 크레딧 금액은 \$500입니다.

크레딧 청구 방법

뉴욕 주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고서와 함께 양식 NYC-208을 작성하여 해당 신고서 상에 본 크레딧을 청구하십시오.

뉴욕 주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본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크레딧 청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양식 NYC-208, [뉴욕 시 강화 부동산세 크레딧 청구](#) 및 해당 지침(영어로만 제공)을 참조하십시오.